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65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2. 5.
4. 회부일자 : 2024. 2. 7.

II.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범위 확대
 - 당초: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 변경: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

-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포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제3조(적용범위)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협의 완료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3.9.14. ~ 10.5.)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6
- 관계법규 : 별첨 7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57호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²⁾(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³⁾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9호, 2015. 1. 28., 일부개정]

3)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해당 인증 대상이 신축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⁴⁾ 이에 2021년 6월 국회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증축, 전부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였습니다.⁵⁾
- 동 개정조례안은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조문별 검토

1) 적용범위(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인증 대상을 교육청 건축물과 교육청 재정지원 사립학교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 건축물’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⁶⁾(신축·별동 증축·전부 개축·재축)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법적안정성 및 자치법규

4) 보도자료: 공공시설 10곳 중 6.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미인증(더인디고, 2020.10.7.)

5)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정비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의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보편적·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① 상위법 조항의 제목까지 기재하였고(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② 조·항·호를 붙여 써야 함⁷⁾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법률의 통일성과 자구의 체계성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 → 제10조의2제3항제2호],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제출 전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안건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2180-8269)

7)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